

(별지 제16호 서식)

담당부서	사후관리물품 설치(사용)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(승인)서						처리기간
담당과장							즉 시
담당자							
연락처							
신청인	상 호				수입신고번호		
	대표자 성명				수입신고수리일		
	주 소						
	담당자				담당자 전화번호		
설치(사용)장소					통관지 세관명		
적용 법조항					사업의 종류		
최초 반입기한					반입 연장기한		
반입기한 연장 이유							
HS번호	품명	규격	수량	과세가격	관세감면 (분납)액	내국세 감면액	비고
(*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)							
<p>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29조제2항 및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의 설치(사용)장소 반입기한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고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		<p>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(사용)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
* 구비서류 :						수수료	
1. 신청서 1부.						없 음	
2. 반입기한 연장 사유 입증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함)							

※ **유의사항** : 설치(사용)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연장한 기한(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내) 까지 사후관리물품을 설치(사용)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.